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5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선관위,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 1년 만에 입장선회... '정권 눈치보나'

- ⇒작년 3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방안 용역 실시, 실태조사 계획 강한의지 보여
- ✓ 용역공고기간 10일로 단축, 용역제안서 하루 만에 초스피드 심사...적극 추진
- ✓ 2012년 양대 선거 대비,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방안 강구 목적 명시
- ✓ 올해 3차례 선거법개정 국회제출 의견서에서는 제외, 갑작스런 태도변화
- ✓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등 용역결과 4건, 법개정 미반영
- ✓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서 투표시간 연장, 비용 문제 거론하며 난색표명, 소극적 태도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의지를 보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년만에 갑자기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선관위가 보여준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 실태조사 추진의지를 보면 올해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 나서야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비정

규직 투표율을 높이자는데 선관위가 갑자기 소극적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 정권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민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1년3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기한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적극 추진했다.

실태조사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효성있는 투표참여 확대방안 강구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 입법지원 활동시 참고자료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고용형태상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공민권 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용역입찰 공고기한 단축사유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정치개혁특위에 연구결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언급,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반영할 의사를 드러냈었다.

용역 연구결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방안으로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구축하는 통합명부관리, 부재자투표요건 완화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올해 7월2일, 7월5일, 8월29일 3차례나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 의견에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와 허위보전청구,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제 폐지 등 뿐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MB정부 들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내용면에서 내국인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참여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선관위가 비용문제로 투표시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취지를 무색케 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가 비정규직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도 법개정 의견으로 내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한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법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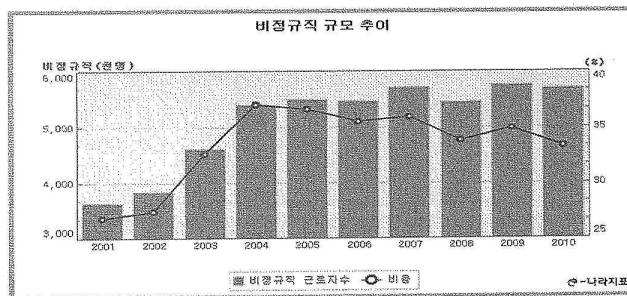
***참고자료 첨부**

<자료:선관위 법제기획관실 ‘비정규직 근로자투표참여 실태조사 계획’>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계획

I. 목 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투표참여 확대방안 강구
- 선거제도 연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 및 입법지원 활동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가 이에 속하는데, 고용형태상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공민권 보장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¹⁾



<출처 : 통계청 2010. 8월 조사결과>

1)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77(검색일 2011. 3. 9.)

III. 사업개요

① 연구용역명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② 연구용역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6. 30.까지

③ 용역내용(단계별 연구)

가. 제1단계

<비 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객관적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및 분석>

○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하여
투표참여율 및 사례 파악

○ 투표 미참여 사유, 투표참여 관련 건의사항 등을 조사

※ 실태조사는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울산 등 대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응답자의 지선, 총선과
대선 참여 실태를 함께 기술할 수 있도록 함.

나. 제2단계

<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사례분석 및 비교 연구>

○ 국가별 투표참여 현황 및 참여 보장제도 유형

○ 국가별 판례, 행정부, 학계, 언론에서의 논의사항 등

다. 제3단계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1~2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확대방안 모색

IV. 세부 추진절차

①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가. 용역입찰공고

- 공고기한 : 2011. 3. 14. ~ 3. 24.(10일)
- 공고기한 단축사유

4월 27일 실시하는 2011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있고, 2012년 양대선거에 대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3월초)되는 등 연구결과가 시급히 필요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

관련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공고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

-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 필요시,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

⑧ 추진일정

세 부 일 정	주 체	기 한
연구주제 선정, 제안요청서 작성·조달청 입찰의뢰	법제과	3.11.까지
용역입찰공고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조달청	3.14.부터
제안서 접수	조달청	3.24.까지
제안서 심사·선정	법제과	3.28.까지
계약체결	조달청	3.31.까지
연구용역결과 납품	용역기관	6.30.까지

- ※ 공고기한 단축사유 : 4월 27일 실시하는 2011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있고, 2012년 양대선거에 대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3월초)되는 등 선거구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시급히 필요해졌으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